

「별첨」

## 청원심사의견서

□ 청원인 : 서산시 동문62동 인영매외 63명

□ 청원명 : 동문62동 토지불부합지역 고시피해에 따른 청원

□ 소개의원 : 박영웅 의원

□ 접수일자 : 1999. 12. 21

□ 회부일자 : 1999. 12. 24

□ 심시기간 : 2000. 1. 13 ~ 2002. 4. 20

### □ 심사의견

#### ○ 동문62동 토지불부합지역 고시피해에 따른 청원요지

- 서산시가 서산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공사완료된 경계측 기준으로 구획정리 확정측량을 하므로써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서산시에서 해결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토지소유자들의 주장과

#### ○ 서산시의견

-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한 원인은 법령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선의 변경등 행정적인 시행착오로 인한 사항이 아니고 지적도가 작성된 1911년 사정이후 필지별 분할, 경계측량 당시 부주의, 현형측량 방법과 도근측량 방법의 차이, 온습도로 인한 도면 신축에 따른 오차발생 누적, 일부 소유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이라는 서산시의 입장과 서로 다른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 그동안 불부합의 원인이 서산제1지구 구획정리사업후 공사완료된 경계를 기준으로 구획정리 확정측량을 하므로써 불부합이 발생하였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각종 서류 및 자료의 검토와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및 증인으로부터의 증언 및 질의답변, 그리고 여러차례에 걸친 현지확인 및 측량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심사를 해보았으나 불부합의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였으며, 민원이 발생한 이후 그동안 이루어진 토지 소유자들의 주장과 서산시의 입장을 여러 가지 경위로 종합해 볼 때 더 이상 지적관리와 관련되는 법령의 논리로는 근본적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 따라서 본 청원의 건은 더 이상 법령의 논리에 따른 해결노력 보다는 많은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민원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아

○ 해결방안으로는

- 청원인들께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점유현황을 측량한 결과로 나오는 면적에 따라서 토지소유자 상호간 정산금을 산정하여 상계정산하는 방안이 본 청원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며,
- 시에서는 지적불부합지 토지소유자간 정산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의견조율 및 승낙서 징구 등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앞장서는 한편
-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오랜세월 겪어온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일부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합의가 도출되면 정산과정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황측량 및 제세공과금의 감면 등 이후 수반되는 모든 행·재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임.